
진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
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2020. 11

제1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

1.1 계획의 배경 및 목적

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, 진도군 관내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의 관리, 이용, 개발·치수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,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, 향후 소하천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.

1.2 실시근거

가.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진도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[별표2]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.

<표 1-1>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	비고
자. 하천의 이용 및 개발	1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	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	

나.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야 함.

<표 1-2>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

구 분	내 용
환경영향평가법	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이 장에서 "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"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(이하 "개발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. 토지이용구상안 3. 대안 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다.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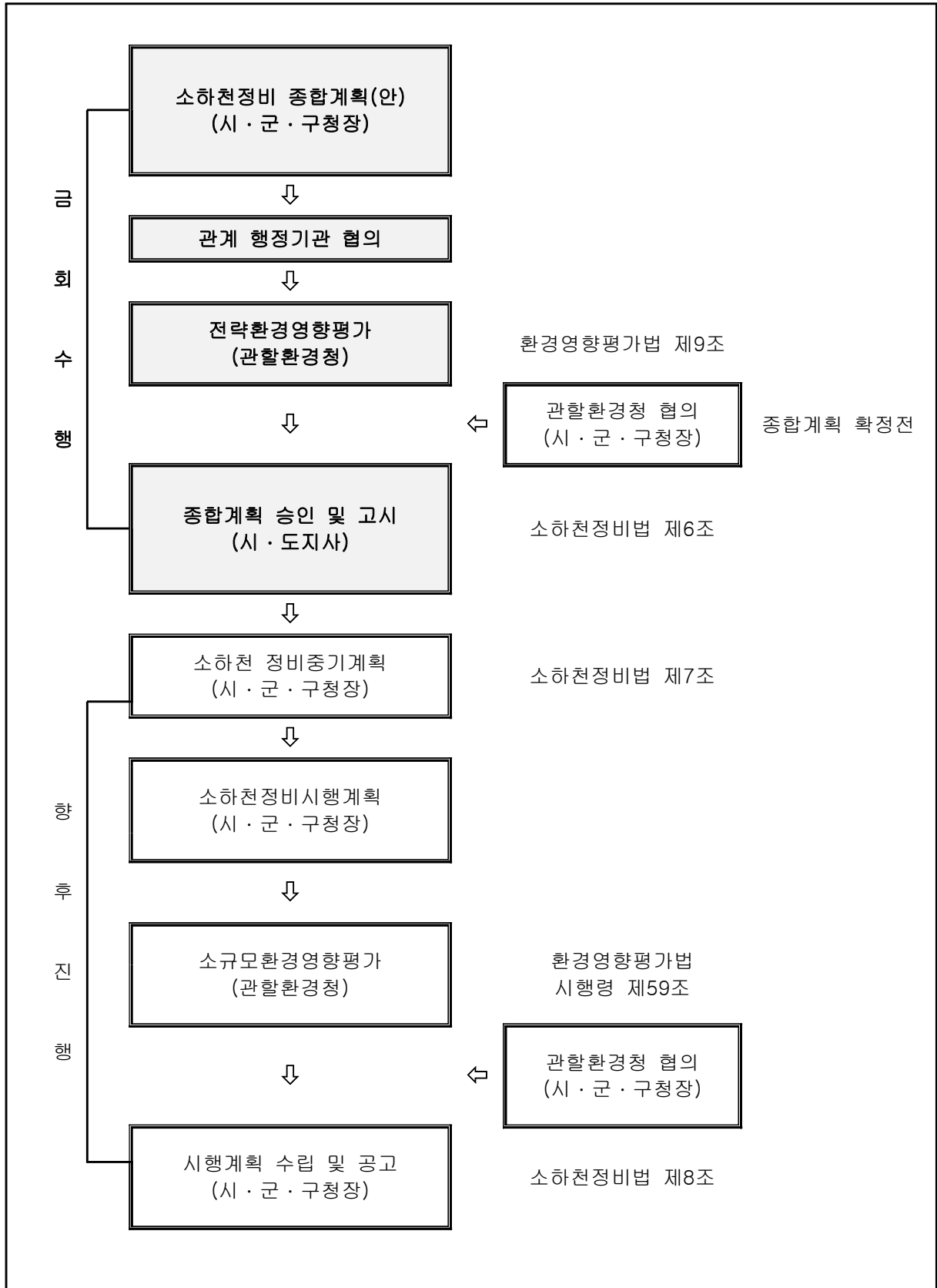
- 본 계획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에 의거 결정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함.

<표 1-3>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근거

구 분	내 용
환경영향평가법	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.

1.3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01. 11. 30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1차) 사전환경성검토 협의
 - 45개소, 52.961km
- 2010. 8. 6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2차) 사전환경성검토 협의
 - 13개소, 24.535km
- 2019. 7. 31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착수
- 2020. 2. 19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
- 2020. 10. 20 ~ 11. 9 :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
- 2020. 11. :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14일 이상)
- 2021. 1.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작성 및 제출
- 2021. 1. :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고·공람
 - 설명회(초안공람기간내, 설명회 개최 7일전 1회이상 공고)
- 2021. 2. : 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 공개(14일 이상)
- 2021. 3. 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



<그림 1-1>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절차

1.4 계획의 내용

- 가. 계획 명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
- 나. 위 치 : 진도군 관내 소하천 58개소(L=86.215km)
- 다. 계획수립기관 : 진도군
- 라. 승인 기관 : 전라남도
- 마. 소하천정비 종합계획

기수립		변 경		증 · 감		비 고
개소	연장(km)	개소	연장(km)	개소	연장(km)	
58	77.496	58	86.215	-	+ 8.719	연장조정없음 : 31개소 연 장 조 정 : 18개소 신 규 지 정 : 9개소 폐 지 : 9개소

<표 1-4>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종합표

구 분	검토 번호	소하천명	조 정 근 거	기고시 연장(km)	가감 (km)	조정후 연장(km)	비고
진도군	폐지 9개소, 신규지정 9개소 / 증 8.719km → 58개소			77.496	▲8.719	86.215	
진도읍	폐지 3개소 / 감 3.014km → 3개소			9.756	▼3.014	6.742	
	-	당동천	대부분 복개(상류 170m 제외)	1.022	▼1.022	-	폐지
	1-01	월평천	중점 유로 변경 및 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1.718	▲0.145	1.863	증
	-	송현천	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	0.931	▼0.931	-	폐지
	-	남산천	지)남동천과 중복지정	1.133	▼1.133	-	폐지
	1-02	매향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2.182	▼0.073	2.109	감
	1-03	수역천	변동 없음	2.770	-	2.770	-
군내면	폐지 2개소 / 감 0.985km → 5개소			7.936	▼0.985	6.951	
2-01	나리천	제내지 보호를 위한 시점 변경	1.300	▲0.300	1.600	증	
	2-02	대사천	대사양수장(배수갑문)까지 중점 변경	2.374	▲0.140	2.514	증
	2-03	신동천	변동 없음	0.769	-	0.769	-
	2-04	송산천	변동 없음	0.462	-	0.462	-
	-	월가천	중·상류부 산지 및 복개, 지정기준 미달	1.025	▼1.025	-	폐지
	2-05	정자천	변동 없음	1.606	-	1.606	-
	-	둔전천	전구간 복개, 지정기준(연장, 하폭) 미달	0.400	▼0.400	-	폐지

구 분	검토 번호	소하천명	조 정 근 거	기고시 연장(km)	가감 (km)	조정후 연장(km)	비고
고군면	폐지 1개소 / 증 1.202km → 6개소			6.041	▲1.202	7.243	
	3-01	석현천	지방하천 군내천 중복구간 제외	1.600	▼0.500	1.100	감
	3-02	고성천	상류 사방댐 직하류로 시점부 변경	0.514	▲1.886	2.400	증
	3-03	벽파천	남해 방류부 까지 종점부 변경	0.845	▲0.311	1.156	증
	3-04	연동1천	변동 없음	0.439	-	0.439	-
	3-05	연동2천	변동 없음	0.843	-	0.843	-
	-	마산천	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	0.495	▼0.495	-	폐지
의신면	폐지 1개소, 신규지정 3개소 / 증 5.217km → 12개소			15.269	▲5.217	20.486	
	4-01	사상천	변동 없음	0.400	-	0.400	-
	4-02	돈지천	변동 없음	1.307	-	1.307	-
	4-03	연주천	변동 없음	1.237	-	1.237	-
	4-04	응덕천	변동 없음	2.177	-	2.177	-
	4-05	신정천	변동 없음	1.905	-	1.905	-
	-	죽청천	전구간 원두천에 포함	0.828	▼0.828	-	폐지
	4-06	원두천	중류 저수지 및 죽청천 하천유로 포함	2.412	▲1.590	4.002	증
	4-07	가단천	변동 없음	1.383	-	1.383	-
	4-08	만길천	변동 없음	2.800	-	2.800	-
	4-09	논수굴천	변동 없음	0.820	-	0.820	-
	4-10	의신신규1천	-	-	▲0.888	0.888	신규
	4-11	의신신규3천	(지)의신천 제외구간	-	▲2.024	2.024	신규
	4-12	의신신규4천	(지)염대천 제외구간	-	▲1.543	1.543	신규
임회면	폐지 2개소, 신규지정 6개소 / 증 5.472km → 16개소			18.443	▲5.472	23.915	
	5-01	죽림천	변동 없음	1.232	-	1.232	-
	5-02	백동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2.164	▼0.044	2.120	감
	5-03	석교천	변동 없음	0.967	-	0.967	-
	5-04	송월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1.317	▼0.100	1.217	감
	5-05	귀성천	여수로 하단으로 시점 변경	1.041	▼0.140	0.901	감
	5-06	탑립천	상류측 사방댐 직하류로 시점 변경	1.100	▲0.050	1.150	증
	5-07	강계천	경지정리 현황에 따라 시점 변경	0.900	▼0.050	0.850	감
	5-08	연동천	여수로 하단 및 남해 유입부로 시·종점 변경	1.763	▲1.310	3.073	증
	-	사령천	지)고방천과 중복지정	1.497	▼1.497	-	폐지

구 분	검토 번호	소하천명	조 정 근 거	기고시 연장(km)	가감 (km)	조정후 연장(km)	비고
임회면	5-09	폐동천	변동 없음	2.577	-	2.577	-
	5-10	호구천	시점부 명슬저수지 여수로 끝으로 변경	2.650	▼0.610	2.040	감
	-	수장천	지)관마천과 중복지정	1.235	▼1.235	-	폐지
	5-11	임회신규1천	하폭 약 4 ~ 5 m / 시점 봉상저수지	-	▲1.425	1.425	신규
	5-12	임회신규2천	하폭 약 3 ~ 5 m / 시점 소류지	-	▲1.273	1.273	신규
	5-13	임회신규3천	하폭 약 3 ~ 5 m / 시점 진도예술인촌	-	▲0.884	0.884	신규
	5-14	임회신규4천	하폭 약 3 ~ 5 m	-	▲0.610	0.610	신규
	5-15	임회신규5천	하폭 약 3 ~ 10 m / 시점 호구저수지	-	▲1.716	1.716	신규
	5-16	임회신규6천	구) 지방하천 고방천	-	▲1.880	1.880	신규
지산면	개소수 변동 없음 / 감 0.750km → 11개소			15.829	▼0.750	15.079	
	6-01	관마1천	변동 없음	1.600	-	1.600	-
	6-02	관마2천	변동 없음	0.958	-	0.958	-
	6-03	보전1천	변동 없음	0.805	-	0.805	-
	6-04	와우천	경지정리지구 중복 제외	2.217	▼1.487	0.730	감
	6-05	금노천	변동 없음	1.400	-	1.400	-
	6-06	가치천	변동 없음	1.582	-	1.582	-
	6-07	가학천	변동 없음	0.876	-	0.876	-
	6-08	보전천	저수지까지 시점부 변경	2.233	▲0.737	2.970	증
	6-09	외삼당천	변동 없음	1.311	-	1.311	-
	6-10	내삼당천	변동 없음	1.597	-	1.597	-
	6-11	행기미천	변동 없음	1.250	-	1.250	-
	조도면	개소수 변동 없음 / 증 1.577km → 5개소			4.222	▲1.577	5.799
7-01		유토천	저수지 하류 남해안 유출부지점까지 소하천연장	0.957	▲1.577	2.534	증
7-02		육동1천	변동 없음	0.996	-	0.996	-
7-03		육동2천	변동 없음	0.647	-	0.647	-
7-04		신전천	변동 없음	0.622	-	0.622	-
7-05		산행천	변동 없음	1.000	-	1.000	-

제2장 대상지역의 설정

2.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

2.1.1 대상지역 및 선정사유

가. 계 획 명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

나. 위 치 : 진도군 관내 소하천 58개소(L=86.215km)

다. 계획수립기관 : 진도군

라. 승 인 기 관 : 전라남도

- 진도군 관내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의 관리, 이용, 개발·치수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·분석하여,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, 향후 소하천정비 사업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.

2.1.2 설정방법

- 광역영향 대상범위 설정 : 전라남도 진도군 전역
- 중점영향 대상범위 설정 :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- 설정사유 : 계획하천 주변 현황 파악 및 영향예측을 위해 계획하천 인근에 위치한 정온 시설 및 주변 수계를 중심으로 선정
-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(평가대상지역)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<표 2-1>와 같이 설정함.

<표 2-1>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

항 목		검 토 내 용	대상지역
계획의 적정성	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- 사업지역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	- 계획의 비교, 입지, 수요측면에서 대안 비교·검토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
<표 계속>

항 목		검 토 내 용	대상지역	
자연 환경의 보전	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	- 동·식물상의 서식지훼손 및 영향여부 등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
	지형 및 생태축보전	-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여부 등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
	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- 사업시행에 따른 인위적 경관조성이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여부 파악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
	수환경의 보전	지표수질 (수리·수문)	-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에 따른 영향예측 - 운영시 홍수량, 홍수위 검토에 따른 시설물 계획	- 계획하천
		해양환경	- 본 계획수립에 따른 기수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에 따른 영향예측 - 해양유입 소하천 현황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	- 계획하천
생활 환경의 적정성	환경기준 부합성	대기질	-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	소음·진동	- 공사시 건설 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·진동 영향 및 저감대책 수립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	토양(하천저질)	-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환경 변화 등	-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
	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-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적정성	- 계획하천	
	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- 공사시 발생 폐기물에 의한 영향 및 처리대책	- 계획하천	
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환경친화적 토지이용	- 사업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상의 변화 파악	- 계획하천	

◦ 환경질(지표수질, 하천저질) 조사시 계획하천 1개소 당 측정지점 1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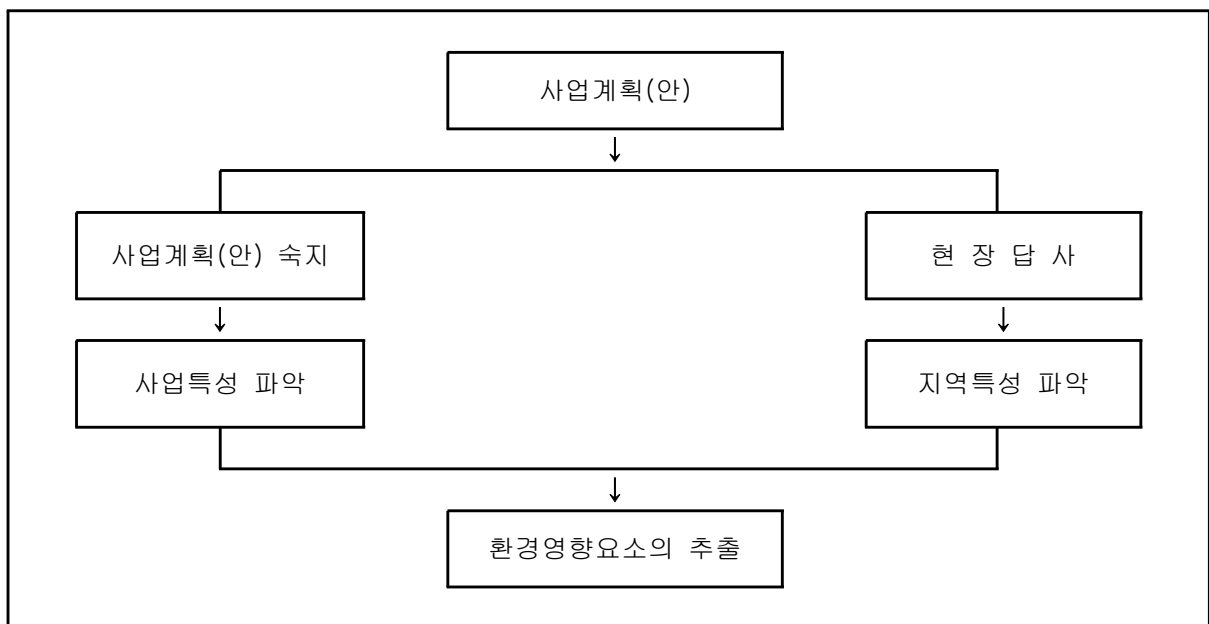
<표 2-2> 환경질 측정항목

구 분	조 사 항 목	개소수	비 고
지표수질	유량, 수소이온농도(pH),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, 용존산소(DO),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, 총인(T-P), 부유물질량(SS), 총유기탄소(TOC), 총대장균군, 총질소(T-N)	58	10개 항목 (2회)
하천저질	강열감량, COD, T-N, T-P, Cu, Cr, Zn	58	7개 항목 (1회)

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

3.1 환경영향요소 추출

- 본 사업시행에 있어서 계획하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접영향권까지 포함하여 환경 항목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향요소를 추출하였으며, 공사시 및 운영시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.



<그림 3-1>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

3.2 중점평가항목의 설정

- 평가항목 선정은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영향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.
- 평가 항목 설정 시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[별표1]에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·제시

〈표 3-1〉 평가 항목의 선정

세 부 평 가 항 목		선 정 사 유		
1) 계획의 적정성	가)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◦ 각종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·부합성		
	나)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◦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비교		
2) 입지의 타당성	가) 자연환경의 보전	(1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◦ 동·식물상 현황 및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	
		(2)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	◦ 절·성토 및 축제, 보축 등 하천시설물에 따른 지형변화	
		(3)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◦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	
	(4) 수환경의 보전	수질 (수리·수문)	◦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수계영향 ◦ 소하천정비에 따른 홍수위 변화 및 개수계획 수립	
		해양환경	◦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반영	
	나) 생활환경의 안정성	(1) 환경기준부합성	대기질	◦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
			소음·진동	◦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소음·진동 발생
			토양(하천저질)	◦ 하천저질 현황파악
		(2)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◦ 공사시 오수 및 폐기물 발생	
	(3) 자원·에너지순환의 효율성	◦ 폐유 및 생활·건설폐기물 발생		
다)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◦ 하천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			

◦ 본 계획시행에 따른 검토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특성, 환경영향요소,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중점평가항목과 일반검토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항목으로 설정함.

〈표 3-2〉 평가항목의 선정

구 분	검토대상항목
중점검토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생물다양성·서식지보전(동·식물상) ▪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(지형·지질) ▪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▪ 수환경의 보전(수질, 수리·수문) ▪ 환경친화적 토지이용
일반검토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환경기준의 부합성(대기질, 소음·진동, 토양(하천저질)) ▪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▪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

3.3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

- 평가 범위·방법 등의 선정은 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2018.12.12, 환경부”을 준용하여, 중점평가항목을 계획의 특성,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.

<표 3-3> 평가 범위·방법 선정

구 분		평 가 범 위	평 가 방 법
생물다양성· 서식지보전		○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물서식공간의 변화에 따른 육상 및 육수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- 육상 및 육수 동·식물 분포현황 및 변화예측 - 종 분포, 식생, 식생보전등급 변화예측
지형 및 생태축의보전		○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○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-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-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유무
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		○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-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
수환경 의보전	수질 (수리 수문)	○계획하천 및 주변해역	○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환경 영향 - 토사유출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○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·수문 변화
	해양 환경	○계획하천 및 주변해역	○ 본 계획수립에 따른 기수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에 따른 영향예측 ○ 해양유입 소하천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
환경기 준의 부합성	대기질	○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○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-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
	소음 · 진동	○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○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·진동발생 - 공사시 건설소음·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
	토 양 (하천 저질)	○계획하천 및 주변지역	○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환경변화
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	○계획하천	○ 공사시 건설폐기물,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, 분뇨 발생 -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 및 적정처리대책 수립
환경친화적 토지이용		○계획하천	○ 계획시행 전·후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파악

제4장 대안의 설정

4.1 대안의 선정

- "대안"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, 추진전략과 방법, 수요와 공급, 위치와 시기,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.
-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및 계획수립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목적, 기대효과, 소하천별 유역현황, 토지이용현황, 재해현황, 하천공간지정현황,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수립여부(action, no action), 수단·방법(구조적, 비구조적, 구조적+비구조적 대안, 하천의 공간지정별), 수요·공급(하천설계 빈도별)의 대안을 선택하여 비교검토 하여 대안을 선정할 계획임.

<표 4-1> 대안의 종류 및 대안선정

대안종류	대안 선정방법	선정여부	기준
계획비교	◦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	◎	계획수립 여부
수단·방법	◦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	◎	구조적 비구조적 계획수립 용도별 지구지정 설계
수요·공급	◦개발에 관한 수요·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·공급량(규모)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◎	빈도별 검토
입 지	◦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	-	
시기·순서	◦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(예 : 연차별 개발)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	-	
기 타	◦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	-	

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5.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구분	환경영향평가법		의견수렴계획
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	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환경영향평가항목·범위 등의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게재장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진도군 홈페이지 -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(http://www.eiass.go.kr) ◦게재기간 : 14일 이상
전략환경영향평가서 (초안) 주민 등의 의견수렴	법 제13조, 제14조, 제1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초안 공고·공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◦관계기관 의견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협의기관의 장 -승인기관의 장 -관할지방환경관서의 장 -관할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-관할·시장·군수·구청장 -30일 이내 의견 통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초안 공고·공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20~40일 ◦신문공고(지역,일반신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각 1회 이상 ◦주민설명회의 개최 ◦의견 제출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◦관계기관 의견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협의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영산강유역환경청장 -관할 군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진도군수 -관할 도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전라남도지사
공청회 개최	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 ◦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,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환경영향평가법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최할 예정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	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그 내용을 게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게재장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진도군 홈페이지 -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(http://www.eiass.go.kr) ◦게재기간 : 14일 이상

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

6.1 환경영향평가협의회

- 계 획 명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
- 심의방법 : 서면 심의
- 심의기간 : 2020년 10월 20일 ~ 2020년 11월 9일
- 협의회 구성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위원장	진도군 건설교통과	건설교통과장	박○○	소속공무원
위 원	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	주무관	고○○	협의기관
	한국정책평가연구원	선임연구위원	최○○	협의기관 추천 전문가
	목포해양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	교 수	김○○	해양관련 전문가
	(주)우리이엔씨	상 무	김○○	민간전문가
	진도군 군내면 외동산	이 장	이○○	지역주민대표
	진도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	운영위원	김○○	시민단체 전문가
	진도군 건설교통과	주무관	정○○	소속공무원
	진도군 환경산림과	팀 장	한○○	소속공무원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재수립) 전략환경영향평가)

□ 총괄 의견

- 동 계획은 진도군 소하천 58개소(총연장 86.215km)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
- 하천의 이·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, 각 항목별로 현황,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·작성하여야 하며, 특히 저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-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,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

2. 대안

-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목적, 기대효과, 소하천별 유역 현황, 토지이용현황, 홍수 등 재해현황을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(Action/No Action, 하천 설계 빈도에 따른 계획규모 등 대안 포함)을 설정하고 비교·검토하여야 함
- 하천구간별 용도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, 하천 현황(하천 내 시설물 현황 포함),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(보전, 복원, 친수지구)의 대안을 설정하고, 구체적 근거자료(도면 등)를 포함하여 필요성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
- 치수안정도와 하천공간지정 현황,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·방법 대안(구조적 대책, 비구조적 대책, 구조적+비구조적 대책) 설정

3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- 동 계획에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, 해양유입 하천은 해양 환경 분야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
 - 해양유입 소하천 현황 및 해당 해역의 환경현황을 제시하고 하천말단에 수문설치 유무 제시
 - 수문 등이 부재하여 조위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의 경우 조도계수는 하도형상 및 하상여건, 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정류 모의방법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
 - 기수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(기수갈고등, 대추귀고등 등)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 대책 검토·제시
- 계획하천 주변에 생태·자연도 1등급 지역이 위치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두거나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
- 하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가급적 원형보전하되, 최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반드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평가 항목 설정 시에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[별표1]의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제시하고,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, 2018.12.12.)」 및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, (2017.12, 환경부)」 등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
-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·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모두 포함시키고,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 - 「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(소규모·전략) 가이드라인(환경부, 2015.3)」을 참고하여 하천사업 특성을 반영한 검토사항 작성·제시
 - 하천 저질 조사는 중금속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 및 현황 제시
- 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·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,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
 - 법정보호종의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
 - 생태현황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적합한 시기에 조사하여야 하며, 동·식물상 각 분류군별로 정량적·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(현지조사표 첨부)하여 상세히 수록하고, 조사지점, 조사구역, 조사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
-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 - 1/5,000 ~ 1/25,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, 생태자연도, 야생생물보호구역,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 제시

-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의 경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
-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, 관련 행정 계획과의 연계,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

4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주민 등 의견수렴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 및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~ 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
-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 및 홍보
-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 및 그림·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

5. 기 타

- 동 계획을 입안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·반영하고,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

2020. 10. .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)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고 진 희 (인)

인쇄 : 정병락 / 건설교통과 (2020-11-03 17:09:16)

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환경정책 연구기관



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

수신 진도군수(건설교통과장)
(경유)

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회신 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건설교통과-92330(2020.10.20) 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토의뢰한 환
2. 경영향평가협의회 "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"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
견을 회신합니다.

붙임 :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1부. 끝.

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장



담당	최준규	실장	2020. 10. 27. 김유미	본부장	전결
협조자					
시행	환경평가본부-24008	(2020. 10. 27.)	접수	건설교통과-94820	(2020. 10. 28.)
우	30147	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	/		
전화번호	044-415-7698	팩스번호	044-415-7744	/ jgchoi@kei.re.kr	/ 대국민 공개

문서관리카드 건설교통과-94820 1/1

붙임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식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)

□ 총괄 의견

- 본 건은 진도 관내 45개 소하천(52.961km)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(계획 수립의 타당성 입증 및 최적대안 선정 등)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- 각 하천별 환경적(지형·지질, 생태 등)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함
- 대상지역의 범위가 매우 넓어 각 소하천별 자연환경의 특성이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소하천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유사한 자연환경 특성을 갖는 소하천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
2. 토지이용 구상안

- 없음

3. 대안

- 계획수립(변경 또는 유지)의 필요성
- 하천별로 건설되는 구조물(호안, 제방, 횡적 구조물 등)의 설치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- 없음
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- 없음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- 없음

2020. 10. 26.

심의위원 최준규  (인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)

□ 총괄 의견

○ 하천의 이·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, 하천의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대상지역은 소하천 정비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·분석, 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탁방지막, 침사지 등의 저감대책 등을 검토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3. 대안

○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(Action)과 미수립(No Action) 비교시 계획 수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계획하천 인근 지역의 보호지역 및 주변 서식하는 동·식물상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주민의견 수렴 관련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인근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

6. 기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없음

2020.11.8.

심의위원

김건우 (인)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)

□ 총괄 의견

○ 본 사업은 진도군 소하천 58개소(L=86.215km)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각 소하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.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하천특성에 따른 적절한 토지이용과 홍수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
○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, 상수원보호구역, 야생생물보호구역,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·생태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 포함되는 하천은 이·치수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
3. 대안

○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(동식물상),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(토지이용, 지형·지질),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, 수환경의 보전(수질, 수리·수문)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여야 함.

○ 계획하천 주변으로 서식하는 동·식물상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여 평가서 초안과 함께 비치하고 지역주민에게 배포하는 등(on-off line)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.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5호)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하여야 함.

2020. 10. 28.

심의위원

김정열

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)

□ 총괄 의견

-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적극 수렴 필요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 -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
2. 토지이용 구상안
 -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주길바람
3. 대안
 - 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4. 평가 항목.범위.방법 등
 - 의견없음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 -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 -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진도군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

2020. 10. 22.

심의위원 이계영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)

□ 총괄 의견

○ 향후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나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
○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변 정온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하여야 함

2. 토지이용 구상안

○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3. 대안

○ 의견없음
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
○ 계획 시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
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○ 주민설명회시에는 전문용어 사용을 최대한 지양토록 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
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
○ 의견없음

2020.10.22

심의위원 김광훈인
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

(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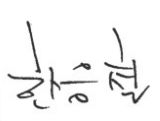

□ 총괄 의견

- 진도군 소하천정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로 하천의 이·치수 기능을 고려 하되 자연하천지형을 보전하고 수질 및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
□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

1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
 -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함.
2. 토지이용 구상안
 - 하천제방 및 호안정비 계획은 계획홍수 수위, 하폭, 제방의 높이, 통수 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어야 함.
 - 하천 본래의 유로, 하폭·하상을 최대한 보전 유지하고 재해예방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바람.
3. 대안
 -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목적, 기대효과, 토지이용현황, 상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·검토 바람.
4. 평가 항목·범위·방법 등
 - 평가항목별로 제시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적합한 현황조사 및 영향 등을 예측하여 수립 바람.
5.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 -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함.
6. 기 타(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)
 - 특이사항 없음

2020. 10. 26.

심의위원  
(인)